

海外建設促進法(案) (全文)

第1章 總 則

第1條(目的) 이 법은 海外建設促進에 관한 事項을 規定함으로써 海外建設을 振興하고 海外建設工事的 適正한 施工을 기하여 國際收支의 向上과 國民經濟의 發展에 寄與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用語의 定義) 이 법에서 使用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海外建設工事'라 함은 海外에서 發注되는 土木 建築, 其他 工事로서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것을 말한다.
2. `海外建設用役'이라 함은 海外建設工事的 調査, 計劃, 設計, 監理, 諮問 其他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用役을 말한다.
3. `海外建設業'이라 함은 `元都給, 下都給 其他 名稱' 如何에 불구하고 海外建設工事 또는 海外建設 用役 (以下 `海外工事'라 한다)을 都給받는 營業을 말한다.

第3條(他法과의 關係) 海外建設業에 관하여 이법에 規定된 것을 제외하고는 建設業法의 規定을 準用한다.

第2章 海外建設業의 免許等

第4條(海外建設業의 免許) ① 海外建設業을 營為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營業의 種類別로 建設部長官의 免許를 받아야 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海外建設業의 免許를 받을 수 있는 者는 다음 各號와 같다.

1. 建設業法에 의하여 建設業免許를 받은 者.
2. 技術用役有成法의 規定에 의한 技術用役業 登錄을 받은 者 및 建築士法의 規定에 의한 建築士 事務所 登錄을 한 者
3. 海外建設業을 目的으로 設立된 法人.

③ 建設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海外建設業의 免許를 한 때에는 이를 官報에 告示하여야 한다.

④ 政府投資機關子算會計法의 適用을 받는 政府投資機關으로서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機關은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海外建設業을 할 수 있다.

第5條(海外建設業의 免許基準) 第4條의 規定에 의한 海外建設業의 免許基準이 될 技術能力 資本金 個人인 경우에는 財産을 말한다. (以下 같다) 施設裝備 또는 工事實績등에 관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第6條(受注 專當會社의 設立) ① 建設部長官은 海外建設業者 또는 第4條 第2項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者가 單獨 또는 共同으로 出資하여 海外工事的 受注業務만을 專擔하는 法人(以下 "受注專擔會社"라 한다)을 設立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海外建設業의 免許를 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受注專擔會社에 대한 海外建設業의 免許基準은 第5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따로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③ 建設部長官은 受注專擔會社에 대하여 다른 海外建設業者에 優先하여 海外工事的 都給許可 其他 支援을 할 수 있다.

第7條(手数料) 海外建設業의 免許를 받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의하여 免許 手数料를 納付하여야 한다.

第8條(海外建設業者의 缺格事由)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者는 海外建設業의 免許를 받을 수 없다. 法人에 있어서는 그 任員에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者가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1. 海外建設業의 免許申請日 現在 계속하여 5年 이상 國內에 居住하지 아니한 者. 다만 業務上 一時的으로 海外에 出張한 期間은 國內 居住期間으로 본다.

2. 破産者로서 復權되지 아니한 者.

3. 第20條 第2號 내지 第7號의 事由로 海外建設業의 免許가 取消되고 그 取消된 날로부터 3年을 경과하지 아니한 者.

4. 이 법의 規定에 違反하여 罰金 이상의 刑의 宣告를 받고 그 執行이 終了되거나 그 執行을 받지 아니하기로 確定된 후 3年을 經過하지 아니한 者.

5. 國家保安法 反共法 또는 刑法 第87條 내지 第104條의 2의 罪를 犯하여 禁錮 이상의 刑의 宣告를 받은 者로서 刑法 第81條의 規定에 의한 裁判의 失效宣告를 받지 아니한 者.

第9條(海外工事的 都給許可) ① 海外建設業者가 海外工事を 都給받고자 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建設部長官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② 海外建設業者가 外國에서 海外工事を 都給 받고자 하는 경우에 時急을 要하는 때에는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當該 地域의 大韓民國在外公館長의 許可를

받아 海外工事を 都給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 海外工사의 都給許可를 한 在外公館長은 建設部長官에게 지체없이 報告하여 追認을 얻어야 한다.

第10條 (許可의 通知) ① 建設部長官은 海外工사의 都給을 許可 또는 追認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關係機關의 長에게 通知하여야 한다.

② 第1項의 通知를 받은 關係機關의 長은 必要한 協助나 支援을 하여야 한다.

第11條 (海外工事都給許可의 缺格事由) 다음 각호의 1에 該當하는 者는 第9條의 規定에 의한 許可 또는 追認을 받을 수 없다.

1. 政府機關 公共団体 또는 外國機關으로부터 出入停止處分을 받고 解除되지 아니하였거나 其他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不實한 事由가 있는 者.

2. 第20條 第4号 내지 第8号에 該當하는 行爲를 한 날로부터 3年을 경과하지 아니한 者.

3. 第21條 第2号의 規定에 의하여 海外工사의 都給許可取消處分을 받은 후 3年을 경과하지 아니한 者.

第12條 (新規 海外市場開拓者에 대한 都給許可의 優先)

海外建設業者가 새로운 海外市場을 開拓하여 當該地域의 海外建設振興에 寄與한 功이 현저하다고 認定되는 경우에는 建設部長官은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當해 地域에서의 海外工사의 都給을 다른 海外建設業者에 優先하여 許可를 할 수 있다.

第3章 海外工사의 受注秩序等

第13條 (海外工事受注活動 計劃의 申告) 海外建設業者가 海外工事を 受注하고자 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의하여 受注活動計劃을 미리 建設部長官과 當해 地域의 大韓民國在外公館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第14條 (調整命令) ① 建設部長官은 同一한 海外工사에 대하여 2人以上の 海外建設業者 相互間에 受注競合이 있을 경우에는 當해 海外建設業者에 대하여 必要한 調整이나 勸告 또는 命令을 할 수 있다.

② 建設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調整 勸告 또는 命令을 하기 위하여 必要한 경우에는 當해 海外建設業者로 하여금 資料를 提出하게 하거나 關係機關의 意見을 들을 수 있다.

第15條 (合作施工등의 勸告) ① 建設部長官은 海外建設業者의 對外競爭力의 強化와 大規模工사의 受注 및 施工을 위하여 海外建設業者 2人以上の 合作을 勸告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合作施工을 하는 海外建設業者에 대하여는 第6條 第3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第16條 (進出地域 또는 工事都給의 制限) ① 建設部長官은 海外建設業者 相互間의 過當競爭의 防止를 위하여 必要한 때에는 國家別 또는 地域別로 進出業者의 數를 制限 할 수 있다.

② 建設部長官은 海外工사의 健全한 施工을 위하여 必要한 때에는 海外建設業者가 都給받을 수 있는 1件工사의 限度額과 重額하여 都給 또는 施工할 수 있는 總限度額을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制限할 수 있다.

第4章 海外建設振興

第17條 (海外建設獎勵補助金の 交付) 政府는 海外建設輸出을 獎勵하기 위하여 必要한 경우에는 新規 地域開拓費, 海外市場調査費, 海外에 從事시킬 要員의 訓練費 등의 費用을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의하여 予算의 범위내에서 補助할 수 있다.

第18條 (海外建設業者에 대한 支援) 政府는 다른 法律에서 輸出業者에 對하여 支援을 하도록 規定하고 있는 경우에 海外建設業者에 대하여도 輸出 業者에 準하여 支援을 한다.

第5章 監 督

第19條 (海外建設業의 免許取消 또는 營業停止) 建設部長官은 海外建設業者가 다음 각호의 1에 該當하는 때에는 海外建設業의 免許를 取消하거나 營業의 停止處分을 할 수 있다. 다만 第1号 내지 第3号에 該當하는 때에는 海外建設業의 免許를 取消하여야 한다.

1. 海外建設業의 免許基準에 未達하게 된 때.

2. 不正한 手段으로 海外建設業의 免許를 받은 때.

3. 海外工사의 粗雜施工, 遲延 등으로 國威를 損傷시킨 때.

4. 落札후 正當한 事由없이 契約을 拋棄한 때.

5. 海外工事都給許可없이 海外工事を 受注한 때.

6. 海外工事都給許可를 받고 正當한 事由없이 入札에 不參함으로써 다른 海外建設業者의 進出에 支障을 招來한 때.

7. 第14條 第1項 規定에 의한 建設部長官의 命令에 違反한 때.

8. 正當한 事由없이 다른 海外建設業者의 海外工事都給을 妨害한 때.

9. 海外建設業의 免許를 받은 후 2年以内に 海外工事都給実績이 없거나 계속하여 2年以上 海外工事を 都給받지 아니한 때.

第20條 (海外工사의 都給許可의 取消) 建設部長官은 海外建設業者가 다음 각호의 1에 該當하는 때에는 海外工사의 都給許可를 取消하여야 한다.

1. 海外建設業의 免許가 取消된 때.

2. 不正한 手段으로 海外工사의 都給許可를 받은 때.

策21條 (施工 및 經營實態의 調査等) ① 建設部長官은 必要하다고 認定될 때에는 海外建設業者로 하여금 그 業務財産등 關係資料를 提出하게 하거나 必要한 命令을 할 수 있으며 所屬公務員으로 하여금 經營實態 또는 海外工事의 施工狀況을 調査하게 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依한 命令 및 調査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第22條 (報告義務) 海外建設業者가 海外工事を 受注하거나 施工하는 경우에는 그 受注활동 및 施工狀況에 關하여 大統領令이 定하는바에 依하여 建設部長官에게 報告하여야 한다.

第6章 雜 則

第23條 (海外建設計劃의 樹立) 建設部長官은 每年 海外建設市場을 調査하여 익년도 海外建設輸出 計劃을 樹立하여야 한다.

第24條 (免許取消된 海外建設業者의 계속工事) ① 제19조 및 제20조의 規定에 依하여 海外建設業 免許의 効力이 상실되거나 免許가 取消된者, 또는 그 포괄승계를 한者는 그 상실 또는 取消前에 締結한 都給契約에 依한 海外工事に 限하여 계속 施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規定에 依하여 建設工事を 繼續하는 者는 當該工事を 完成 할때까지 海外建設業者로 본다.

第7章 罰 則

第25條 (罰則) 海外建設業者가 그의 또는 業務上 重大한 過失로 海外工事を 조작하게하여 工事의 竣工 또는 完成후 當該工事의 瑕疵補修期間內에 目的物에 重大한 손피가생긴 때에는 5年以下의 懲役 또는 2백만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第26條 (罰則) 다음各號의 1에 該當하는 者는 1년 以下의 징역 또는 50만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1. 海外建設業 免許를 받지 아니하고 海外建設業을 營爲한者.
2. 海外工事 都給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海外工事を 都給받은者.
3. 不正한 手段으로 海外建設業의 免許 또는 海外工事의 都給許可를 받은者.
4. 第14條 第1項의 規定에 依한 建設部長官의 命令에 違反한者.

第27條 (罰則)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者는 30만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1. 第22條 第1項의 規定에 依한 建設部長官의 命令에 違反하거나 調査를 拒否, 妨害 또는 기피한者.
2. 第13條 및 第23條의 規定에 依한 申告 또는 報告義務를 怠慢히 하거나 허위로 申告 또는 報告者.
3. 第14條 第2項의 規定에 依하여 建設部長官이 要求하는 資料를 허위로 作成하거나 不應한者.

第28條 (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나 法人또는 자연인의 代理人 使用人 其他의 從業員이 그法人 또는 자연인의 業務에 關하여 제26조 내지 제28조의 違反行爲를 한 때에는 그行爲者를 罰하는外에 그法人이나 자연인에 對하여도 該當 各本條의 罰金刑을 과한다.

附 則

① (施行日) 이 法은 公布后 3월이 經過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② (經過措置) 이 法 施行當時 建設業法의 規定에 依하여 海外建設業의 許可를 받은者는 이 法에 依한 海外建設業의 免許와 當該工事의 都給許可를 받은것으로 본다.

③ (經過措置) 이 法 施行前에 行한 行爲에 對한 罰則의 適用에 있어서는 建設業法의 從前에 規定에 依한 다.

에너지 소비절약포어

에너지는 国力이다. 아껴써서 愛國하자.
기름으로 만든 전기, 한등꺼서 애국하자.

쓰고나면 再生없다. 에너지를 節約하다.

에너지를 아껴써서 외화지출 막아내자.
너도나도 걸기운동, 절약되고 건강준다.